

[] 인증운영기관

청정수소

[] 인증시험평가기관

지정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"√"표시를 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		
신청인	① 기관명(법인명)		② 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		
	③ 대표자 성명		④ 생년월일			
	⑤ 소 재 지					
	⑥ 기관대표전화					
	⑦ 설립근거					
	⑧ 설립목적					
	⑨ 설립연월일					

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의4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8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6제1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정관 사본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계획서 3.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4조의8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. 그 밖에 인증기관 지정심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 직원 확인사항	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